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59
----------	---------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통체계 및 전문성을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에
대한 적기 진단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운영(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1) 갈등조정협의회를 부구청장 직속 갈등관리협의체로 구성·운영
- 2) 주민배심원단 및 비상임 갈등 조정관의 협의체 참여를 통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황별 전문 의견 수렴
- 3) 공공갈등의 조정과 예방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써 주민배심원단
운영근거 마련(안 제11조)

나. 비상임 갈등 조정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감사담당관-8168 (2018. 8. 8.)호 「공공갈등관리(소통)시스템
강화추진 계획」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18. 9. 19. ~ 2018. 10. 10. 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갈등관리협의체의 협의 결과 보고 제9조제1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주민구정평가단 등 3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집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1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이하“협의체”)”로 한다.

제13조 제목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의장은 사안별로 5명 이상 8명 이하의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사자 및 갈등관리협의체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를 “주민배심원단 또는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협의회는”을 “협의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한다.

제14조 제목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을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합의 결과문”을 “협의결과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합의 결과”를 “협의체의 협의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의결과”를 “협의결과”로 한다.

제15조 제목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을 “(비상임 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가”를 “비상임 갈등 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갈등관리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 또는 10명 이내의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사안별 2명 이내의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전문가”를 “비상임 갈등 조정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전문가”를 “비상임 갈등 조정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 4. (생략)</p> <p>5. <u>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u></p> <p>6. (생략)</p> <p>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12조(<u>갈등조정협의회</u>)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갈등관리협의체의 협의 결과 보고</u></p> <p>6.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 중</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주민구정평가단 등 3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집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10명 이하의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u></p> <p>제12조(<u>갈등관리협의체</u>) ----- -----</p>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 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

----- 갈등
관리협의체(이하"협의체"-----
-----.

제13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의장은 사안별로 5명 이상 8명 이하의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사자 및 갈등관리협의체로 한다.

③ -----
-- 주민배심원단 또는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협의체-----
-----.

④ ----- 협의체-----
-----.

⑤ 협의체는 -----
-----, ----- 협의체 -----
-----.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

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 6. (생략)

<신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행) ① 협의체-----
----- 협의결과문-----

② 협의체의 합의결과-----
-----.

③ ----- 협의 결과-----
-----.

제15조(비상임 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 ① -- 비상임 갈등 조정관 -----
-----.

1. 갈등관리협의체 -----
-

2. ~ 6.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갈등관리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약 또는 10명 이내의 공공갈등관리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사안별 2명 이내의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비
상임 갈등 조정관 -----

-----.

제19조(수당지급 등) -----

----- 협의회-----
----- 비상임 갈등 조정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통체계를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관점의 의견 제시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강화하고자하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성 명	감사담당관 하 성 만 (담당 : 행정7급 박진영)
연락처	02-2600-6015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소통체계 및 전문성을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에 대한 적기 진단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운영(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비상임 갈등 조정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운영하여 주민배심원단 및 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의 협의체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상황별 전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8-36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현봉
입안주무부서	감사담당관	통보(조치)일		2018. 9.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서울강서040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명	박진영	전화번호 02-2600-60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체계를 강화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갈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관리협의체로 개편·운영, 비상임 갈등조정관 지정·운영 ○ 법령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조항이 없으며,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에 있어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성별통계 반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화옥/02-2600-6762)

감사담당관장 귀하